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2.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교육부	작 성 자	이름	김수진
	담당부서 (과)	대학정책과		직급	서기관
	국장	송근현		연락처	044-203-6911
	과장	김태경		이메일	sandle73@mail. go.kr

2026. 09. 02.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송 근 현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2.규제조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3.위임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04~2026.10.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4.8.) ※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이에 맞추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에 위임한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고자 함														
	7.규제내용	상위 법률(「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에 따라, 평가·인증 의무화 대상인 의료과정과 동일하게 평가·인증결과를 약학과정운영학교장도 학년도마다 해당학교의 모든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대학</td><td>약학대학 37개교</td></tr><tr><td>관련기관</td><td>인정기관</td><td>1개</td></tr><tr><td>이해관계자</td><td>수험생, 학생, 학부모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학	약학대학 37개교	관련기관	인정기관	1개	이해관계자	수험생, 학생, 학부모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학	약학대학 37개교														
관련기관	인정기관	1개														
이해관계자	수험생, 학생, 학부모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의료분야와 동일하게 약학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인증 결과가 약사법 제3조의 약사면허 취득과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므로 입시생들에게 해당 학교의 평가·인증 결과를 모집요강에 공개함으로써 약사면허 취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대학은 약학과정의 질 관리를 통해 역량 있는 약학 인재 양성·배출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별도 비용 없음	약학대학에 입학하려는 입시생에게 학생 모집요강을 통해 약학교육 평가·인증결과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선택 기회 보장 및 약사면허 취득에 불이익 사전 차단	비용 없이 편익만 존재
		주요내용	교육 수요자인 입시생들에게 약학 과정 운영학교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알권리 및 학교선택의 자율성 보장에 기여하고, 해당학교는 신입생 충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약학교육의 질 관리·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①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의료과정운영학교</u> 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 ----- --. -- <u>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약학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인증으로 본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 정비 필요

* [법률 제21654호, 2026. 5. 19., 일부개정], [시행 2026. 11. 20.]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내용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약학과정운영학교도 평가·인증 결과를 학년도 마다 해당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 공개해야함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약학과정 운영학교도 평가·인증 결과를 모집요강에 공개하도록 하여 입학이후 약사면허 취득에 영향을 없도록 하는 등 입시생이 입시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	

규제대안2		
-------	--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고등교육법('26.5.) 개정 과정 중 협의	없음	정상추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관평가인증(일반대, 전문대), 학문분야별 평가인증(10개 분야)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인정기관을 지정하여 평가·인증을 실시해오고 있음
 - 현재 학교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인증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여야 하고,
 -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국가고시 및 면허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므로 학년도마다 해당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서 공개해야 함
 - 의료과정과 동일하게 약학과정도 평가·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시생들이 약학운영학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필수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3. 규제목표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를 매해 해당학교의 모든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입시생의 알권리 충족 및 입학 후 면허 취득에 불이익 사전 차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약사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직군이므로 부실 교육 방지와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은 국가에 책무에 해당됨
- 입시 단계에서 접하기 쉬운 ‘모집요강’을 통해서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 질 관리를 유도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임
- 이미 통보받은 인증결과를 모집요강에 단순 기재하는 수준이므로 대학의 행정·재정적 부담은 미미하며, 의·치·한의·간호 등 타 보건 의료계열과의 규제 형평성에도 부합
- 대학이 입은 미미한 부담에 비해 수험생이 부실 대학 진학으로 인해 국시응시자격 상실, 약사면허 취득 불가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공익이 더 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약학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유지, 입시생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평가인증 결과는 인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내용 매년 발간하는 모집요강 책자나 인터넷 원서접수 페이지에 텍스트를 한두줄로 추가하는 수준으로 새로운 인력이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수용성이 높음
- 이미 보건의료계열 학과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모집요강에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고 있어 대학 차원에서 이미 규제 준수를 위한 시스템과 절차가 정착되어 있어 별도의 학습 비용 없이 시행 가능
- 약학대학의 특성상 평가인증 결과는 수험생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누락하거나 숨기려 할 경우 입시 시장에서 허위·과장 광고나 정보 은폐로 오인받아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대학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 고등교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 여부가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직접 연동되어 있어, 대학의 장 입장에서는 준수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필수 행정 절차로 인식하게 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약학교육과정 운영대학은 학교의 기존 전산망, 기존 모집요강 제작과정에 텍스트를 추가하는 수준이므로 행정인력의 추가 업무 부담 거의 없으며, 인정기관도 이미 동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담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예산 수반내용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의학계열 평가·인증 의무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16.6.~시행)
-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37교)은 교육부가 지정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으로부터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아오고 있음('22.8.~)
- **(약사국시와 평가인증 연계)**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25.4.8.~시행)
- **(약학과정 평가·인증 의무)**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26.11.20.~시행)

2. 향후 평가계획

- 대학에 관련 규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법 시행 후('26.11.20) 지속 모니터링

3. 규제 정비계획

- 상위 법률(고등교육법)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개정으로 별도 정비계획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해당없음	26년11월

4. 종합결론

-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25.1.)에 따라, 법 시행일('26.11.20) 이전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모집요강에 공포함으로써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 약사 면허 취득
불이익 사전 차단,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 질관리 유도에 기여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교육 수요자인 입시생들에게 약학 과정 운영학교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알권리 및 학교선택의 자율성 보장에 기여하고, 해당학교는 신입생 충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약학교육의 질 관리·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약학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①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약학과정운영학교
활동제목	약학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결과의 공개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한국약학교육평가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증 결과를 매년 발간하는 모집요강 등에 텍스트 한두 줄로 추가 기재하는 수준이며, 새로운 전산망 구축이나 인력 총원 등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으므로 활동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수험생, 학부모 등 일반 국민
활동제목	약학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결과의 공개
편익항목	수험생 권익 보호, 교육의 질 향상 유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약학대학 평가인증 결과는 졸업생의 약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및 면허취득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수험생이 입시 단계(모집요강 확인 시점)에서 이를 명확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미인증대학 진학시 약사면허 자격 취득 제한으로 시간·경제적 손실 원천 차단 다만, 평가 결과가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대학의 평판 및 신입생 총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들이 교육 환경과 교수 여건을 지속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큼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2.규제조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2														
	3.위임법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9.04~2026.10.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약학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를 반영한 개정된 「약사법」의 시행(2025.4.8.) ※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② 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이에 맞추어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도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5.19. 공포, 2026.11.20. 시행) 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에 위임한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상위 법률(「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 의무화 대상을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과정 운영학교 뿐만 아니라 약학 과정운영 학교도 평가·인증 절차 받고 인정기관도 평가를 진행 등 세부절차를 규정에 규정 ※ 제①항(운영개시 학교의 평가·인증 신청), 제③항(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전 신청), 제④항(인정기관의 평가 완료 및 인증 여부 결정), 제⑤항(인증받지 못한 학교의 재신청)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대학</td><td>약학대학 37개교</td></tr><tr><td>관련기관</td><td>인정기관</td><td>1개</td></tr><tr><td>이해관계자</td><td>수험생, 학생, 학부모 등</td><td></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학	약학대학 37개교	관련기관	인정기관	1개	이해관계자	수험생, 학생, 학부모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학	약학대학 37개교														
관련기관	인정기관	1개														
이해관계자	수험생, 학생, 학부모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목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대학 교육과정에도 평가·인증 의무화 (기대효과) 약학교육의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질 관리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역량을 갖춘 우수 약학인재를 양성·배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평가준비, 기준 충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투입되는 행정력 및 교수진의 시간적 기회비용 ※ 다만, 현재도 약학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피규제자의 비용이 추가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없음	①부실교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료 과오 등)의 사전 예방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약학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약학 학위 및 면허의 대외 신뢰도 제고	의견없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주요내용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에 따라 보건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역량 있는 약학 인재양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부실교육 방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 절감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크며, 타 보건의료 계열과의 형평성·공공성 확보에 기여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세부기준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개정령안 부칙 제2조에 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예정 －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약학 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은 그 유효기간동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인증으로 본다.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	⑤ -----

현 행	개 정 안
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u>의료과정운영학교</u>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생 략) -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u>의료과정운영학교</u>: <u>의료과정운영학교</u>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생 략)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의료과정운영학교</u>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	----- ----- ----- <u>의료 및 약학과정운</u> <u>영학교</u>-----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의료</u> <u>및 약학과정운영학교</u>: <u>의료 및 약</u> <u>학과정운영학교</u>----- -----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현행과 같음) ----- ----- ----- ----- ----. ---- <u>의료 및 약학과정운영</u> <u>학교</u>----- -----

현 행	개 정 안
야 한다.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진 약학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인증으로 본다.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 정비 필요

* [법률 제21654호, 2026. 5. 19., 일부개정], [시행 2026. 11. 20.]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내용	평가·인증 의무 대상인 의료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약학 과정 운영학교도 평가·인증 절차를 받고, 인정기관도 평가를 진행 ※ 제①항(운영개시 학교의 평가·인증 신청), 제③항(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전 신청), 제⑤항(인증받지 못한 학교의 재신청)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약학과정 운영학교도 평가·인증을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절차를 명확화하여 약학과정의 교	

	육과정의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 유도 ※ 현재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규정에 따 라 평가·인증 절차가 진행 중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약학교육평가원	고등교육법(26.5.) 개정 과정에서 협의	없음	정상추진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단서에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규정함
-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약사법」 제3조 등 개정 취지 등 고려
 - 의료과정, 약학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약학인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일반학과와 달리 고도의 실습, 임상 역량, 교육 환경 등이 요구됨에 따라 엄격하고 명확한 세부 절차를 하위규정에 명시해야 함
 - 국가고시와 연계된 의학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서 정한 평가·인증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운영하고 있어, 약학과정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 평가·인증 절차는 대학 입시부터 졸업까지 대학의 학사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기존의 의학계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의학계열의 의무 평가·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의료과정(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약학’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대안이 적절

3. 규제목표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해 의학계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약학교육과정 운영학교가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속 유도하여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배출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 및 기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적용 중인 보건의료계열 간 규제 형평성 확보
 - 약학을 전공하는 37개 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2022년)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오고 있어 교육의 품질관리 및 부실교육기관의 진입 사전 차단
 - 피평가자의 입장인 대학의 행정·비용적 측면, 평가결과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나 이로 인해 예방되는 부실 약사 배출의 사회적 비용, 의약품 오남용 위험 방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가피
 - 평가·인증대상으로 ‘약학’ 교육과정이 추가될 뿐 최소한 필수적인 평가·인증 절차는 기존 의료과정과 동일하게 유지
- ※ 제①항(운영개시 학교의 평가·인증 신청), 제③항(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전 신청), 제⑤항(인증받지 못한 학교의 재신청)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약학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유지를 위해 존속기한 미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 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해당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약학대학 평가·인증 제도를 의무적 운영하며 아래 국가는 국가시험 응시와 연계되어 있음

국가	약학교육 평가인증기관	의무 여부	특징
미국	ACPE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	사실상 의무	인증 없이는 약사 국가시험 (NAPLEX) 응시 불가
호주	APC (Australian Pharmacy Council Ltd)	의무	인증 과정 졸업생만 등록 약사 시험 응시 가능
영국	GPhC (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	의무	MPharm 과정 인증 필수, 졸업 후 국가시험 응시 가능
캐나다	CCAPP (Canadian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Pharmacy Programs)	의무	인증 대학 졸업생만 약사 시험 응시 가능

○ 미국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 (명칭) Accreditation Council for Pharmacy Education(1932년 설립)
- (주요기능) 약학 전문학위 프로그램 평가인증, 약사 연속교육 제공기관 인증, 약국테크니션 교육 프로그램 인증, 국제 프로그램 인증 서비스
- (인정기관) USDE(연방 교육부), CHEA(고등교육인증협의회)
- (정기절차) 대학 자체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현장평가 → 평가팀 보고서 작성(판정) → 대학 의견 제출 → 이사회 심의·의결(인증 형태와 주기 결정) → 후속관리(중간보고서 제출, 필요시 집중 방문, 중대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 (인증 형태) <신설> 사전후보 / 후보 / 완전인증, <기준> 인증유지 / 주기 단축 인증 / 보호관찰 / 인증철회 / 자진반납·운영 중단

○ 호주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 (명칭) Australian Pharmacy Council Ltd
- (주요기능) 호주·뉴질랜드 약학 학위과정 평가인증, 인턴 프로그램 인증, 외국 약사 자격심사, 면허시험 개발·시행
- (인정기관) 「보건의료인 규제 국가법」에 따라 호주약사위원회가 인증
- (정기절차) 대학, 신청 및 일정협의 → 자체평가자료 제출 → 서면 검토 → 현장방문 → 평가보고서 작성(기준별 충족여부 판정) → 대학 의견 제출 →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인증 여부, 인증기간, 부과조건 결정) → 약사위원회 통보

및 승인 → 연차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및 이행상황 점검

- (인증 형태) 잠정인증 / 인증 / 조건부인증 / 인증기간 단축 / 인증 거부·철회

○ 영국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 (명칭) General Pharmaceutical Council
- (주요기능) 약학교육 평가인증, 약사·약국테크니션 등록 및 규제, 약국감독, 전문성 기준 제정, 징계
- (인정기관) 「Pharmacy Order 2010」에 따라 평가인증 권한이 부여되며 PSA(보건의료 규제기관 전반을 감독하는 독립기구)가 상시 감독
- (정기절차) 대학, 신청 및 사전협의 → 기준별 충족 근거를 담은 자료 제출 → 사전 문서 검토 → 현장방문 → 평가보고서 작성(기준별 충족여부 판정) → 대학 의견 제출 → 인증 결정 및 공개 → 연차 모니터링(매년 조건 이행상황 점검)
- (인증 형태) 인증 / 조건부인증 / 상시 조건 부과 / 신설과정 단계 인증 / 인증 거부·철회

○ 캐나다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 (명칭) Canadian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Pharmacy Programs
- (주요기능) 약사 양성 학위과정 평가인증, 약국테크니션 교육과정 인증, 국제 프로그램 인증 서비스
- (인정기관) 연방 교육부가 없고 각 주 약사규제당국이 면허 요건으로 CCAPP 인증 프로그램 졸업을 규정
- (정기절차) 대학, 자체평가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현장평가 → 평가팀 보고서 작성(기준별 충족 여부 판정) → 대학의견 제출 → 이사회 심의·의결(인증 형태, 기간, 부과조건 결정) → 연차보고 및 후속 관리
- (인증 형태) 잠정인증 / 정규인증 / 조건부·보고 요구 인증 / 보호관찰 / 인증철회·거부

○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본 조항은 약학 교육과정 운영 개시 및 운영학교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절차이고, '22년부터 이미 37개 전체 약학대학이 약학교육 평가·인증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교육부는 22년부터 약학분야 인정기관으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지정되어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신설 및 새로운 행정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대학으로부터 평가·인증수수료를 받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학교육과정 운영대학은 평가·인증 의무화 이전부터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집행가능성은 낮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의학계열 평가·인증 의무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16.6.~시행)
-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37교)은 교육부가 지정한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 으로부터 절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아오고 있음('22.8.~)
- **(약사국시와 평가인증 연계)**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25.4.8.~)
- **(약학과정 평가·인증 의무)**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26.11.20.~)

2. 향후 평가계획

인정기관과 함께 규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법 시행 후 ('26.11.20) 지속 모니터링

3. 규제 정비계획

- 상위 법률(고등교육법) 시행 예정에 따른 위임사항 개정으로 별도 정비계획 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제1항, 제3항, 제5항	해당없음	26.11.

4. 종합결론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고등교육법」 개정('25.5.19.)에 따라, 법 시행일('26.11.20) 이전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여 약학인 양성기관의 체계적 질 관리 유도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6	2026	5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의무화에 따라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역량 있는 약학 인재양성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부실교육 방지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 절감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크며, 타 보건의료 계열과의 형평성·공공성 확보에 기여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절차 >

①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약학 교육과정 운영학교		
활동제목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		
비용항목	기타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6	0	0
	2027	0	0
	2028	0	0
	2029	0	0
	2030	0	0
	합계	0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연도	산식설명	산식
	2026	정기평가비 25백만원(5년 중 1회) ※ 현재도 약학대학(37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한국약학교육원)으 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피규제자(대학)의 비용이 추가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없음	0
	2027	정기평가비 25백만원(5년 중 1회) ※ 현재도 약학대학(37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한국약학교육원)으 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피규제자(대학)의 비용이 추가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없음	0

	2028	정기평가비 25백만원(5년 중 1회) ※ 현재도 약학대학(37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한국약학교육원)으 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피규제자(대학)의 비용이 추가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없음	0								
	2029	정기평가비 25백만원(5년 중 1회) ※ 현재도 약학대학(37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한국약학교육원)으 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피규제자(대학)의 비용이 추가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없음	0								
	2030	정기평가비 25백만원(5년 중 1회) ※ 현재도 약학대학(37교)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한국약학교육원)으 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피규제자(대학)의 비용이 추가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없음	0								
근거설명	○ (규제개요)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단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인증 의무화 대상을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과정 운영학교 뿐만 아니라 약학 과정운영 학교도 평가·인증 절차 받고 인정기관도 평가를 진행 등 세부절차를 시행령으로 규정 필요 ○ (피규제 대상) 37개 약학과정 운영 대학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대학</th><th>인증기간</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td><td></td><td></td><td></td></tr> </tbody> </table>			구분	대학	인증기간	비고				
구분	대학	인증기간	비고								

구분		대학	인증기간	비고
1	2021년 인증	경상국립대	2022.1.1.~2026.12.31.(5 년)	26년 평가 중
2		대구가톨릭대		
3		덕성여대		
4		성균관대		
5		숙명여대		
6		원광대		
7		전남대		
8		조선대		
9	2022년 인증	단국대	2023.3.1.~2028.2.28.(5년)	
10		동국대		
11		목포대		
12		순천대		
13		영남대		
14		중앙대		
15		차의과학대		
16	2023년 인증	가톨릭대	2024.3.1.~2029.2.28.(5년)	26년 평가 중
17		강원대		
18		경희대		
19		연세대	2024.3.1.~2027.2.28.(3년)	
20		우석대		
21		인제대		
22	2024년 인증	경북대	2025.3.1.~2030.2.28.(5년)	
23		부산대		
24		서울대		
25		아주대		
26		제주대		
27		충북대	2025.3.1.~2028.2.29.(3년)	
28		한양대		
29		전북대		
30	2025년 인증	가천대	2026.1.1.~2031.2.28.(5년)	
31		계명대		
32		고려대		
33		삼육대		
34		이화여대		
35		충남대	2026.3.1.~2031.2.28.(5년)	
36		경성대		
37		동덕여대		
○ (개정안에 따른 추가 부담) 현재도 약학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본문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약학교육원의 평가·인증을 받고 있어, 평가·인증 의무화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음 다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의학계열의 의무 평가·인증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의료과정(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약학’ 을 추가하려는 것임
--	-----------------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재학생과 약학 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
활동제목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실시
편익항목	재학생의 교육의 질 보장,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약사면허 자격과 관련있는 평가·인증 절차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정 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약학과정 운영학교도 평가·인증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약학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과 표준화 유도